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길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9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내용과 취지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 사항에 따라 규정하여 청년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년 예술인’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 사항에 따라 규정하여 명확히 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